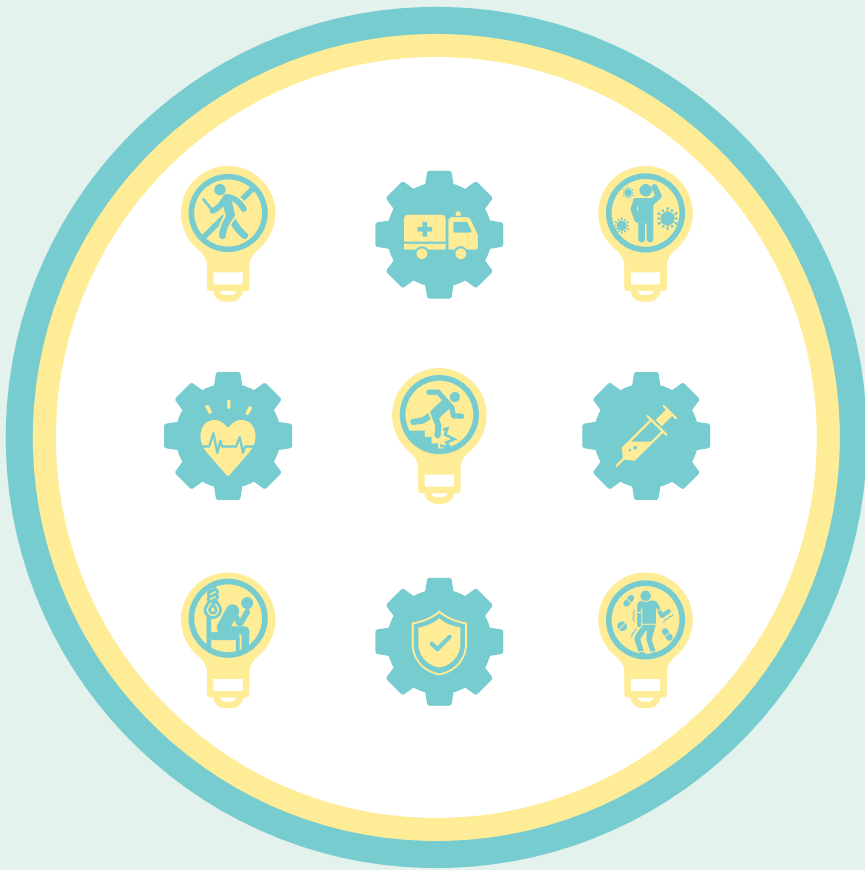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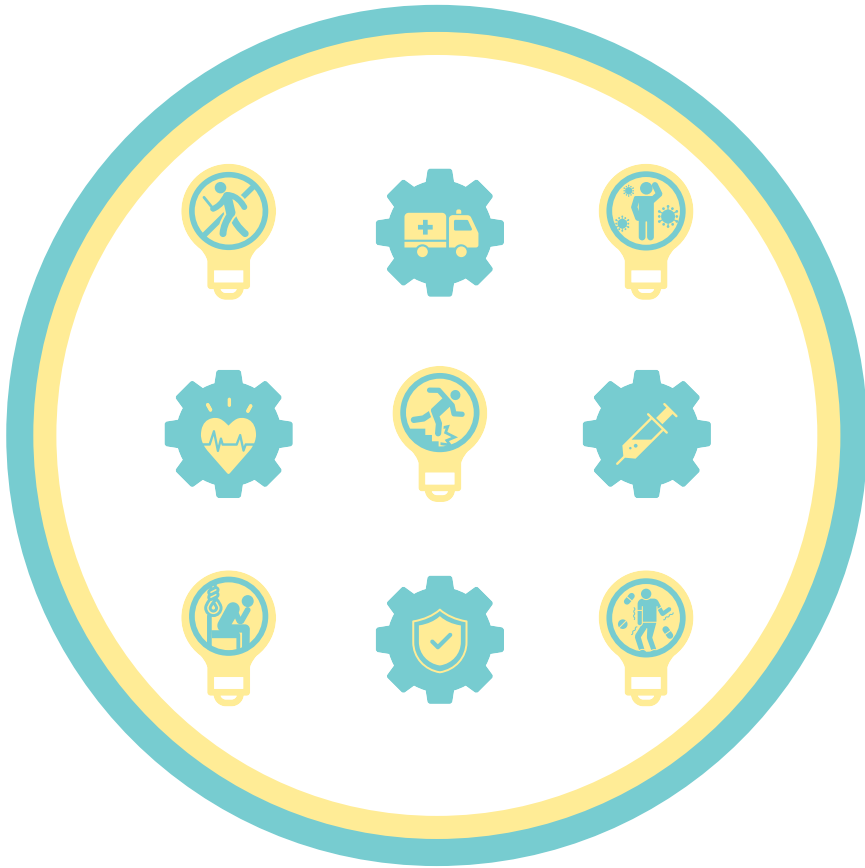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CONTENTS

I

개요

1. 추진배경	4
2. 범위 및 적용대상	4
3. 관련 법령 현황	5

II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6
2. 개인정보보호 원칙	6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7

III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1. 재난 대응	8
2. 감염병 등 대응	12
2-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2-② 가족의 전염성 질병 발생·확산 방지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20
3-① 실종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발견	
3-② 자살위험자 보호	
3-③ 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4.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28
4-① 보이스 피싱 등 피해방지	
4-②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IV

수칙 활용방안

	31
--	----

부록

1.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32
2.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34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35

I 개요

1 추진배경

-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초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 다수 발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미흡 사례

- 경찰이 30대 남성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아동을 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렌트카 업체에게 해당 남성의 핸드폰 번호 등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핸드폰 번호 제공이 지연되어 범죄 대응 미흡(21.2.)
-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지자체가 소방관서에 교통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질의 다수
- 코로나 19 장기화로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퍼져 사생활 침해 우려





→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

2 범위 및 적용대상

- 범위** ① 재난, ② 감염병, ③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제공 절차·방법, 제공 가능 사례 등

긴급 상황 시 적용 법령

1 재난 대응 	1-1 태풍·홍수·풍랑 및 화재·붕괴 등 재난(「재난안전법」)
2 감염병 등 대응 	2-1 감염병 발생(「감염병예방법」) 2-2 가축전염병 발생(「가축전염병예방법」)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3-1 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실종아동법」) 3-2 자살 위험자 발견(「자살예방법」) 3-3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등(「위치정보법」 등)
4 급박한 재산손실 등 위기상황 대응 	4-1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 4-2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지원법」)

※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적용대상 생명·신체·재산 상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기관 및 신상정보·연락처·영상정보·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3 관련 법령 현황

법률(안내서 상 약칭)		소관부처
1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4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보건복지부, 경찰청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보건복지부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
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소방청
9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위원회
13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 붙임 : 관련 법령 주요 내용

II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며(헌재2005.5.26.99헌마513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의해 구체화 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등)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보호법 제16조)

📌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보호법 제23조, 제24조)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처리 가능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보호법 제35조~제38조)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도,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허용**(보호법 제18조제2항)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법, 119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

- 정보주체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성인이 실종되어 구조가 필요한 경우, 소재 파악에 필요한 CCTV 영상은 구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방청 등에게 제공 가능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정보를 방송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해당 방송에 필요한 긴급상황 촬영 영상을 방송국에 제공 가능

大韓民國 憲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III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1 재난 대응 *재난안전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¹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가 수집·이용

- ① **중앙대책본부장**²·**지역대책본부장은**³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⁴,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난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정보**⁵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1항)
- ②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2항)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자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과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을 말함

2 **중앙대책본부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됨

나 제공

- ①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재난대응 관련 업무수행 기관에게** 재난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3항)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다 보호조치 의무

- ①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은**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4항)

-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② **누구든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5항)

3 **지역대책본부장** :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대책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대책본부를 두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이 됨

4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도 포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5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2.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가.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라.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재난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재난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재난대응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참고 |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1 지자체에서 대규모 홍수로 인한 구조대상 피해자 규모 확인이 시급하다며, 침수지역 인근에 촬영된 CCTV 영상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공해도 될까요?

A. (가능) 홍수 등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수색·구조를 위한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Q2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려는 경우, 지자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당 소방당국에 제공해도 될까요?

A. (불가)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난관리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난을 대비하려는 경우로서 급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재난 대응·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호법에 부합됩니다.

결정례 | 안양시 교통·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소방서·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확인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양시는 위 목적으로 재난 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영상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각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방범영상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0-17호

2 감염병 등 대응

2-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

가 수집·이용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2.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 기록부 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의 정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자
-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도 포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나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3항)

* 보건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함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 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및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4항)

-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 ** 가.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다 질병관리청장 등의 보호조치 의무

- 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건의료기관 등은**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3항)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
 - * 다른 기관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감염병 대응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참고 |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1 개인사업자인데,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 신용카드 전표 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A. (가능)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2 감염병 전파 차단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방문기록 등의 정보를 감염병 사태 종료 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A. (불가) 감염병 사태 종료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결정례 소방청의 119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제공받을 수 없다. (중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청은 본 건 대상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주요증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 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4호

<참고> 감염병이란?(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찌꺼기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중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침구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8.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②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확산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

가 수집·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유료도로 관리권자에게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 포함)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1항·제2항)

나 제공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한정됨

다 보호조치 의무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은**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4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정보주체에게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사실, 3.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5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가축전염병 예방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가축전염병 예방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 (제23조·제24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참고>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게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참고 | FAQ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제3종 가축전염병), 돼지일본뇌염(제2종 가축전염병)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의 개인차량 통행정보를 유료도로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불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주 및 관리인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협 대응

3-① 실종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발견 *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 약취·유인 등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가 수집·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실종아동법 제9조제2항·제3항)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예시) 이동통신사, 주요 인터넷 포털사, I-PIN 제공사 등

**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i)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ii)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실종아동등의 동의를 이유로 경찰관서의 요청 거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실종아동법 제18조제1의3)

나 보호조치 의무

①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실종아동법 제9조제4항)

②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경찰관서의 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실종아동등의 발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 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참고 |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Q1 경찰관서의 장이 가출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 로그기록,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될까요?

A. (가능) 경찰관서의 장은 가출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아동법」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위치추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오히려,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성인인 가족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CCTV 영상 등 확인이 가능할까요?

A. (제한적으로 가능)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종이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불만한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명백히 생명·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CCTV 영상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장애가 없는 성인인 실종아동법 적용대상이 아님

Q3 아동의 납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납치 용의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제한적으로 가능) 「실종아동법」은 범죄와 관련된 용의자의 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중 4. 통신사실 확인자료 참고, 구체적 절차는 p.32 참고)

결정례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수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가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중략)

경찰청은 실종자의 수색·수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포함되어 보호자가 해당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2-015호

3-② 자살위험자 보호 * 자살예방법

자살위험자 중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수집·이용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협조해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1항·제2항·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나 보호조치 의무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은** 요청사유, 긴급구조 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3항)

②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즉시 통보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5항)

③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6항)

④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7항)

- ⑤ **긴급구조기관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8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경찰·소방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참고 | FAQ



인터넷 카페에 집단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황상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도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동반 자살 모집자와 그 동조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와 동조자의 인적사항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자살의사를 표현한 사람과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등 긴급구조 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3-③ 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 위치정보법

본인·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용

*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가 수집·이용

①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긴급구조기관’)**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위치정보법 제29조제1항·제5항)

②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위치정보법 제29조제2항·제5항)

*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나 보호조치 의무

①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위치정보법 제29조제9항)

* 요청자, 요청 일시 및 목적,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②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위치정보법 제29조제6항)

- ③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위치정보법 제29조제8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긴급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긴급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긴급구조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긴급구조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 (제23조·제24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참고> 긴급한 상황인데도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등 **생명, 신체의 위험이 우려되어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인의 구조에 필요한 CCTV 영상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조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외부의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119법 제4조제3항)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결정례 |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을 추가한 후 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청의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모든 차량의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영상을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4-19-21호

4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4-① 보이스피싱 등 피해방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등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일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②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 **제4조(지급정지)** 제2항,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제2항,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2항,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3항, **제9조(채권의 소멸)** 제2항,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제3항 및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2항·제3항, **제16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보호법 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4-②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발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2항)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긴급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긴급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긴급복지지원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보호법 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보호법 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보호법 제35조~제38조)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결정례 공주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나목),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라목)을 명시하고 있다.

(중략)

예방접종이 발병빈도가 높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안내와 상담 업무도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시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중략)

△△시 보건소가 대상포진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이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 보건소는 △△시로부터 본 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6-258호

IV 수칙 활용방안

1. 본 수칙은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긴급구조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
2. 본 수칙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법령 질의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음

관계 법령(비고)	관계부처	부서	연락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044-205-5215
실종아동법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47
자살예방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0
실종아동법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02-3150-1394
		수사심사정책과	02-3150-0994
재난안전법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346
위치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정책과	02-2110-1528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0
전기통신사업법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4
신용정보법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과	02-2100-2973
119법	소방청	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3.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서는 법령 개정 및 질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자료마당-지침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부록

부록1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1. CCTV 등의 영상 :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재 확인에 필요한 영상 등 개인정보는 경찰에 제공 가능(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3호)

※ CCTV 영상으로는 정보주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납치·감금 등에 따라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

2. 통신자료* : 수사관서의 장 등이 납치·감금한 자 등의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자료제공요청서에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요청기관의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참고>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 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신 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3. 신용정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6호)

<참고>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6호)

4. **통신사실 확인자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 다만, 수사를 위해 실시간추적자료 및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내란의 죄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요청 가능

***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참고>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5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6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개월(시의·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제2항)

부록2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칙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긴급구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긴급구조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고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제38조)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관련 규정도 별도로 준수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종료 후 파기 및 질병관리청장 통보 의무
-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자로부터 동의받을 의무
- 자살예방법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의무 등

부록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 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⑦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신설 2020. 6. 4.>

정보 제공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정보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요청 정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등
요청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정보 제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우편, 팩스, 전화, 위치정보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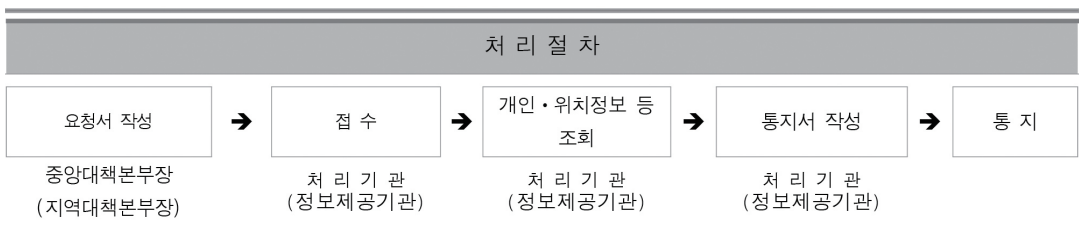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 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4.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 ③ 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상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 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獮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위치정보(이하 이 항에서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터넷주소 파기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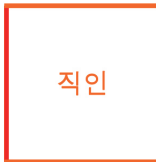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

	요청자	주무과장 (상황실장)	요청 담당자
년 월 일 시 분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신고자(보호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사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위치정보사업자

귀하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8. 4. 25.>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

		요청자	주무과장 (상황실장)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자(보호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요청 사유			
요청 자료	기간		
	내용		
비 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관련 사업자

귀하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8. 4. 2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요청자	주무과장 (상황실장)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정보	성 명	생년월일(개인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신고자(보호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요청 사유		
요청 자료	기간	
	내용	
비 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관련 사업자 귀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인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 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 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제1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발 행: 2021년 10월
발 행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본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 및 신규 질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 긴급상황시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